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확인서

본인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청약함에 있어서 사업체의 매출액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중앙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계약자명		생년월일	
사업체명			
매출액 (직전 3개년)	사업연도	직전년도 년	직전년도-1 년
	연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 사업기간이 1년 미만 등 연매출액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기간 중 월평균매출액을 산출하여 전년도 또는 금년 추정 연매출액을 기재

매출액은 공제 가입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만일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달라 중소기업 관련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 (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 참고 >	업종	평균 연매출액
업종별 소기업 기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140억원 이하
	제조업(13개) * 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화학물질, 의료용 물질, 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전자부품,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 기계, 자동차, 가구 13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사업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100억원 이하
	제조업(9개) * 담배, 섬유, 목재, 펠트·종이, 고무, 인쇄, 의료·시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8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자재생업(수도업제외), 부동산업	4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장비·수리·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5억원 이하

(2019. 4. 1. 개정 시행) (2025. 12. 18 개정 26. 1. 1 시행)